

< 사진규격 및 응시수수료 >

● 응시원서 사진 규격

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**최근 6개월 이내(2020.3.4.이후)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(가로 3.5cm×세로 4.5cm)으로,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cm ~ 3.6cm**이어야 함.

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
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

배경은 **균일한 흰색**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.

졸업생은 교복 착용 사진 사용 금지

※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<http://www.passport.go.kr>) 여권사진규정 참조

● 응시수수료

응시 영역 수	4개영역 이하	5개영역	6개영역
응시수수료(원)	37,000	42,000	47,000

(※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반드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 처리)

<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>

- 대상: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[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,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), 법정차상위계층(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자활근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]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
- 졸업생, 검정고시합격자, 기타 학력인정자 및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

구분	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법정차상위계층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차상위계층 확인서
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0.8.4.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